장위 지웰에스테이트(장위 1구역 1-2획지)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811-0031) 및 청약Home 청약콜센터(1644-7445)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소독제 및 비접촉체온계 사용 거부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한 경우
- 비접촉온도계 및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체온 확인 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당 사가 고지한 기간 및 운영시간 외,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공급계약체결 등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대표전화(1811-0031)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위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모든 상담원이 상담 중으로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입주자모집공고는 202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건축물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15547(2020.12.02.)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본 도시형생활주택(이하 "공동주택" 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 32조 제1항 및 제59조에 의한 규정만을 적용합니다.
■ 본 건축물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제57조 등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은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서울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15547(2020.12.02.)]
■ 공급대상물
- 공급위치 :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24-26번지 일원(장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1-2획지)
- 공급규모 : 지하 2층, 지상 12층 3개동 中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73세대 중 일반공급 143세대 (임대 30세대)
- 층별 용도 : 지하2~지하1층(기계실, 주차장 등), 지상1층(근린생활시설), 지상2~12층(도시형생활주택)

■ 입주시기 : 2022년 9월 예정(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세대]

군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 공급 세대수	비고
			주거전용	벽체공유	공유면적	소계	기타	주차				
1군	39.9750	A	39.9750	3.9870	12.7150	56.6770	4.5510	23.3510	84.5790	24.7230	67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1군	39.9750	A1	39.9750	3.9870	12.7150	56.6770	4.5510	23.3510	84.5790	24.7230	10	
2군	39.6530	B	39.6530	3.8410	12.6140	56.1080	4.5140	23.1640	83.7860	24.5220	16	
2군	39.6530	B1	39.6530	3.8410	12.6140	56.1080	4.5140	23.1640	83.7860	24.5220	28	
3군	38.9960	C	38.9960	3.7990	12.4040	55.1990	4.4390	22.7670	82.4050	24.1110	6	
3군	38.9960	C1	38.9960	3.7990	12.4040	55.1990	4.4390	22.7670	82.4050	24.1110	8	
3군	38.9960	C2	38.9960	3.7990	12.4040	55.1990	4.4390	22.7670	82.4050	24.1111	8	
합계											143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원]

군	타입	공급 세대	층구분	동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계약+15일	2021.03.25.	2021.06.25.	2021.09.24.	2021.12.24.	2022.03.25.	2022.06.24.	입주지정일
1	A	67	2	101	201	318,946,183	159,906,917	478,853,100	10,000,000	37,885,310	47,885,310	47,885,310	47,885,310	47,885,310	47,885,310	47,885,310	143,655,930
			3	101	301	318,946,183	159,906,917	478,853,100	10,000,000	37,885,310	47,885,310	47,885,310	47,885,310	47,885,310	47,885,310	47,885,310	143,655,930
			4	101	401	321,292,922	161,083,478	482,376,400	10,000,000	3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144,712,920
			5	101	501	321,292,922	161,083,478	482,376,400	10,000,000	3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144,712,920
			8	101	801	322,857,370	161,867,830	484,725,200	10,000,000	3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145,417,560
			9	101	901	324,421,818	162,652,182	487,074,000	10,000,000	3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146,122,200
			10	101	1001	324,421,818	162,652,182	487,074,000	10,000,000	3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146,122,200
			12	101	1201	324,421,818	162,652,182	487,074,000	10,000,000	3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146,122,200
			2	102	201	318,946,183	159,906,917	478,853,100	10,000,000	37,885,310	47,885,310	47,885,310	47,885,310	47,885,310	47,885,310	47,885,310	143,655,930
			4	102	401	321,292,922	161,083,478	482,376,400	10,000,000	3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144,712,920
			5	102	501	321,292,922	161,083,478	482,376,400	10,000,000	3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144,712,920
			6	102	601	322,857,370	161,867,830	484,725,200	10,000,000	3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145,417,560
			7	102	701	322,857,370	161,867,830	484,725,200	10,000,000	3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145,417,560
			8	102	801	322,857,370	161,867,830	484,725,200	10,000,000	3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145,417,560
			10	102	1001	324,421,818	162,652,182	487,074,000	10,000,000	3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146,122,200
			11	102	1101	324,421,818	162,652,182	487,074,000	10,000,000	3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146,122,200
			12	102	1201	324,421,818	162,652,182	487,074,000	10,000,000	3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146,122,200
			2	102	202	322,857,370	161,867,830	484,725,200	10,000,000	3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145,417,560
			3	102	302	322,857,370	161,867,830	484,725,200	10,000,000	3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145,417,560
			4	102	402	325,986,333	163,436,567	489,422,900	10,000,000	3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146,826,870
			5	102	502	325,986,333	163,436,567	489,422,900	10,000,000	3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146,826,870
			6	102	602	327,550,781	164,220,919	491,771,700	10,000,000	3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147,531,510
			7	102	702	327,550,781	164,220,919	491,771,700	10,000,000	3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147,531,510
			8	102	802	327,550,781	164,220,919	491,771,700	10,000,000	3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147,531,510
			9	102	902	329,115,229	165,005,271	494,120,500	10,000,000	3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148,236,150
			10	102	1002	329,115,229	165,005,271	494,120,500	10,000,000	3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148,236,150
			11	102	1102	329,115,229	165,005,271	494,120,500	10,000,000	3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148,236,150
			12	102	1202	329,115,229	165,005,271	494,120,500	10,000,000	3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148,236,150
			2	102	203	322,857,370	161,867,830	484,725,200	10,000,000	3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145,417,560
			3	102	303	322,857,370	161,867,830	484,725,200	10,000,000	3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145,417,560
			6	102	603	327,550,781	164,220,919	491,771,700	10,000,000	3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147,531,510

1	A	67	8	102	803	327,550,781	164,220,919	491,771,700	10,000,000	3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147,531,510
			9	102	903	329,115,229	165,005,271	494,120,500	10,000,000	3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148,236,150
			10	102	1003	329,115,229	165,005,271	494,120,500	10,000,000	3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148,236,150
			2	102	204	322,857,370	161,867,830	484,725,200	10,000,000	3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145,417,560
			3	102	304	322,857,370	161,867,830	484,725,200	10,000,000	3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145,417,560
			4	102	404	325,986,333	163,436,567	489,422,900	10,000,000	3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146,826,870
			5	102	504	325,986,333	163,436,567	489,422,900	10,000,000	3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146,826,870
			6	102	604	327,550,781	164,220,919	491,771,700	10,000,000	3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147,531,510
			7	102	704	327,550,781	164,220,919	491,771,700	10,000,000	3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147,531,510
			8	102	804	327,550,781	164,220,919	491,771,700	10,000,000	3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147,531,510
			9	102	904	329,115,229	165,005,271	494,120,500	10,000,000	3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148,236,150
			10	102	1004	329,115,229	165,005,271	494,120,500	10,000,000	3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148,236,150
			11	102	1104	329,115,229	165,005,271	494,120,500	10,000,000	3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148,236,150
			12	102	1204	329,115,229	165,005,271	494,120,500	10,000,000	3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148,236,150
			2	102	205	322,857,370	161,867,830	484,725,200	10,000,000	3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145,417,560
			3	102	305	322,857,370	161,867,830	484,725,200	10,000,000	3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145,417,560
			4	102	405	325,986,333	163,436,567	489,422,900	10,000,000	3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146,826,870
			5	102	505	325,986,333	163,436,567	489,422,900	10,000,000	3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48,942,290	146,826,870
			6	102	605	327,550,781	164,220,919	491,771,700	10,000,000	3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147,531,510
			7	102	705	327,550,781	164,220,919	491,771,700	10,000,000	3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147,531,510
			8	102	805	327,550,781	164,220,919	491,771,700	10,000,000	3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49,177,170	147,531,510
			9	102	905	329,115,229	165,005,271	494,120,500	10,000,000	3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148,236,150
			10	102	1005	329,115,229	165,005,271	494,120,500	10,000,000	3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148,236,150
			11	102	1105	329,115,229	165,005,271	494,120,500	10,000,000	3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148,236,150
			12	102	1205	329,115,229	165,005,271	494,120,500	10,000,000	3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49,412,050	148,236,150
			2	102	206	317,381,735	159,122,565	476,504,300	10,000,000	37,650,430	47,650,430	47,650,430	47,650,430	47,650,430	47,650,430	47,650,430	142,951,290
			3	102	306	317,381,735	159,122,565	476,504,300	10,000,000	37,650,430	47,650,430	47,650,430	47,650,430	47,650,430	47,650,430	47,650,430	142,951,290
			4	102	406	320,510,698	160,691,302	481,202,000	10,000,000	38,120,200	48,120,200	48,120,200	48,120,200	48,120,200	48,120,200	48,120,200	144,360,600
			5	102	506	320,510,698	160,691,302	481,202,000	10,000,000	38,120,200	48,120,200	48,120,200	48,120,200	48,120,200	48,120,200	48,120,200	144,360,600
			6	102	606	322,075,146	161,475,654	483,550,800	10,000,000	38,355,080	48,355,080	48,355,080	48,355,080	48,355,080	48,355,080	48,355,080	145,065,240
			7	102	706	322,857,370	161,867,830	484,725,200	10,000,000	3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145,417,560
			8	102	806	322,857,370	161,867,830	484,725,200	10,000,000	3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145,417,560
			9	102	906	324,421,818	162,652,182	487,074,000	10,000,000	3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146,122,200
			10	102	1006	324,421,818	162,652,182	487,074,000	10,000,000	3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146,122,200
			11	102	1106	324,421,818	162,652,182	487,074,000	10,000,000	3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146,122,200
			12	102	1206	324,421,818	162,652,182	487,074,000	10,000,000	3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146,122,200
1	A1	10	2	101	202	318,946,183	159,906,917	478,853,100	10,000,000	37,885,310	47,885,310	47,885,310	47,885,310	47,885,310	47,885,310	47,885,310	143,655,930
			4	101	402	321,292,922	161,083,478	482,376,400	10,000,000	3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144,712,920
			5	101	502	321,292,922	161,083,478	482,376,400	10,000,000	3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48,237,640	144,712,920
			6	101	602	322,857,370	161,867,830	484,725,200	10,000,000	3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145,417,560
			7	101	702	322,857,370	161,867,830	484,725,200	10,000,000	3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145,417,560
			8	101	802	322,857,370	161,867,830	484,725,200	10,000,000	3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48,472,520	145,417,560
			9	101	902	324,421,818	162,652,182	487,074,000	10,000,000	3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146,122,200
			10	101	1002	324,421,818	162,652,182	487,074,000	10,000,000	3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146,122,200
			11	101	1102	324,421,818	162,652,182	487,074,000	10,000,000	3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146,122,200
			12	101	1202	324,421,818	162,652,182	487,074,000	10,000,000	3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48,707,400	146,122,200
2	B	16	2	101	205	312,746,738	156,798,762	469,545,500	10,000,000	3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140,863,650
			3	101	305	312,746,738	156,798,762	469,545,500	10,000,000	3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140,863,650
			4	101	405	315,069,832	157,963,468	473,033,300	10,000,000	3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141,909,990
			5	101	505	315,069,832	157,963,468	473,033,300	10,000,000	3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141,909,990
			6	101	605	316,618,627	158,739,973	475,358,600	10,000,000	3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142,607,580
			8	101	805	316,618,627	158,739,973	475,358,600	10,000,000	3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142,607,580
			9	101	905	318,167,356	159,516,444	477,683,800	10,000,000	3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143,305,140
			10	101	1005	318,167,356	159,516,444	477,683,800	10,000,000	3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143,305,140
			11	101	1105	318,167,356	159,516,444	477,683,800	10,000,000	3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143,305,140
			12	101	1205	318,167,356	159,516,444	477,683,800	10,000,000	3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143,305,140
			2	103	201	311,197,943	156,022,257	467,220,200	10,000,000	36,722,020	46,722,020	46,722,020	46,722,020	46,722,020	46,722,020	46,722,020	140,166,060
			3	103	301	311,197,943	156,022,257	467,220,200	10,000,000	36,722,020	46,722,020	46,722,020	46,722,020	46,722,020	46,722,020	46,722,020	140,166,060
			6	103	601	315,844,263	158,351,737	474,196,000	10,000,000	37,419,600	47,419,600	47,419,600	47,419,600	47,419,600	47,419,600	47,419,600	142,258,800
			7	103	701	316,618,627	158,739,973	475,358,600	10,000,000	3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142,607,580
			11	103	1101	318,167,356	159,516,444	477,683,800	10,000,000	3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143,305,140
			12	103	1201	318,167,356	159,516,444	477,683,800	10,000,000	3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143,305,140
2	B1	28	2	101	203	312,746,738	156,798,762	469,545,500	10,000,000	3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140,863,650
			3	101	303	312,746,738	156,798,762	469,545,500	10,000,000	3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140,863,650
			4	101	403	315,069,832	157,963,468	473,033,300	10,000,000	3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141,909,990
			5	101	503	315,069,832	157,963,468	473,033,300	10,000,000	3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141,909,990
			6	101	603	316,618,627	158,739,973	475,358,600	10,000,000	3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142,607,580
			7	101	703	316,618,627	158,739,973	475,358,600	10,000,000	3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142,607,580
			8	101	803	316,618,627	158,739,973	475,358,600	10,000,000	3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142,607,580
			9	101	903	318,167,356	159,516,444	477,683,800	10,000,000	3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143,305,140
			10	101	1003	318,167,356	159,516,444	477,683,800	10,000,000	3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143,305,140
			11	101	1103	318,167,356	159,516,444	477,683,800	10,000,000	3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143,305,140
			12	101	1203	318,167,356	159,516,444	477,683,800	10,000,000	3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143,305,140
			2	101	204	312,746,738	156,798,762	469,545,500	10,000,000	3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140,863,650
			3	101	304	312,746,738	156,798,762	469,545,500	10,000,000	3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46,954,550	140,863,650
			4	101	404	315,069,832	157,963,468	473,033,300	10,000,000	3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141,909,990
			5	101	504	315,069,832	157,963,468	473,033,300	10,000,000	3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47,303,330	141,909,990
			7	101	704	316,618,627	158,739,973	475,358,600	10,000,000	3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142,607,580
			8	101	804	316,618,627	158,739,973	475,358,600	10,000,000	3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47,535,860	142,607,580
			9	101	904	318,167,356	159,516,444	477,683,800	10,000,000	3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143,305,140
			10	101	1004	318,167,356	159,516,444	477,683,800	10,000,000	3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143,305,140
			11	101	1104	318,167,356	159,516,444	477,683,800	10,000,000	3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143,305,140
			12	101	1204	318,167,356	159,516,444	477,683,800	10,000,000	3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143,305,140
			3	103	302	311,197,943	156,022,257	467,220,200	10,000,000	36,722,020	46,722,020	46,722,020	46,722,020	46,722,020	46,722,020	46,722,020	140,166,060
			5	103	502	314,295,467	157,575,233	471,870,700	10,000,000	37,187,070	47,187,070	47,187,070	47,187,070	47,187,070	47,187,070	47,187,070	141,561,210
			6	103	602	315,844,263	158,351,737	474,196,000	10,000,000	37,419,600	47,419,600	47,419,600	47,419,600	47,419,600	47,419,600	47,419,600	142,258,800
			9	103	902	318,167,356	159,516,444	477,683,800	10,000,000	3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143,305,140
			10	103	1002	318,167,356	159,516,444	477,683,800	10,000,000	3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143,305,140
			11	103	1102	318,167,356	159,516,444	477,683,800	10,000,000	3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143,305,140
			12	103	1202	318,167,356	159,516,444	477,683,800	10,000,000	3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47,768,380	143,305,140
3	C	6	3	103	304	306,317,701	153,575,499	459,893,200	10,000,000	35,989,320	45,989,320	45,989,320	45,989,320	45,989,320	45,989,320	45,989,320	137,967,960
			4	103	404	309,365,005	155,103,295	464,468,300	10,000,000	36,446,830	46,446,830	46,446,830	46,446,830	46,446,830	46,446,830	46,446,830	139,340,490

			5	103	504	309,365,005	155,103,295	464,468,300	10,000,000	36,446,830	46,446,830	46,446,830	46,446,830	46,446,830	46,446,830	46,446,830	139,340,490
			6	103	604	310,888,690	155,867,210	466,755,900	10,000,000	36,675,590	46,675,590	46,675,590	46,675,590	46,675,590	46,675,590	46,675,590	140,026,770
			7	103	704	311,650,532	156,249,168	467,899,700	10,000,000	36,789,970	46,789,970	46,789,970	46,789,970	46,789,970	46,789,970	46,789,970	140,369,910
			9	103	904	313,174,217	157,013,083	470,187,300	10,000,000	37,018,730	47,018,730	47,018,730	47,018,730	47,018,730	47,018,730	47,018,730	141,056,190
3	C1	8	2	103	203	306,317,701	153,575,499	459,893,200	10,000,000	35,989,320	45,989,320	45,989,320	45,989,320	45,989,320	45,989,320	45,989,320	137,967,960
			4	103	403	309,365,005	155,103,295	464,468,300	10,000,000	36,446,830	46,446,830	46,446,830	46,446,830	46,446,830	46,446,830	46,446,830	139,340,490
			5	103	503	309,365,005	155,103,295	464,468,300	10,000,000	36,446,830	46,446,830	46,446,830	46,446,830	46,446,830	46,446,830	46,446,830	139,340,490
			6	103	603	310,888,690	155,867,210	466,755,900	10,000,000	36,675,590	46,675,590	46,675,590	46,675,590	46,675,590	46,675,590	46,675,590	140,026,770
			7	103	703	311,650,532	156,249,168	467,899,700	10,000,000	36,789,970	46,789,970	46,789,970	46,789,970	46,789,970	46,789,970	46,789,970	140,369,910
			8	103	803	311,650,532	156,249,168	467,899,700	10,000,000	36,789,970	46,789,970	46,789,970	46,789,970	46,789,970	46,789,970	46,789,970	140,369,910
			9	103	903	313,174,217	157,013,083	470,187,300	10,000,000	37,018,730	47,018,730	47,018,730	47,018,730	47,018,730	47,018,730	47,018,730	141,056,190
			11	103	1103	313,174,217	157,013,083	470,187,300	10,000,000	37,018,730	47,018,730	47,018,730	47,018,730	47,018,730	47,018,730	47,018,730	141,056,190
3	C2	8	2	103	205	303,270,331	152,047,669	455,318,000	10,000,000	35,531,800	45,531,800	45,531,800	45,531,800	45,531,800	45,531,800	45,531,800	136,595,400
			3	103	305	303,270,331	152,047,669	455,318,000	10,000,000	35,531,800	45,531,800	45,531,800	45,531,800	45,531,800	45,531,800	45,531,800	136,595,400
			4	103	405	304,794,016	152,811,584	457,605,600	10,000,000	35,760,560	45,760,560	45,760,560	45,760,560	45,760,560	45,760,560	45,760,560	137,281,680
			5	103	505	306,317,701	153,575,499	459,893,200	10,000,000	35,989,320	45,989,320	45,989,320	45,989,320	45,989,320	45,989,320	45,989,320	137,967,960
			6	103	605	307,841,386	154,339,414	462,180,800	10,000,000	36,218,080	46,218,080	46,218,080	46,218,080	46,218,080	46,218,080	46,218,080	138,654,240
			7	103	705	307,841,386	154,339,414	462,180,800	10,000,000	36,218,080	46,218,080	46,218,080	46,218,080	46,218,080	46,218,080	46,218,080	138,654,240
			8	103	805	307,841,386	154,339,414	462,180,800	10,000,000	36,218,080	46,218,080	46,218,080	46,218,080	46,218,080	46,218,080	46,218,080	138,654,240
			11	103	1105	309,365,005	155,103,295	464,468,300	10,000,000	36,446,830	46,446,830	46,446,830	46,446,830	46,446,830	46,446,830	46,446,830	139,340,490

■ 공통사항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자체심의 결과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본 주택의 발코니확장 공사 및 세대 내 설치될 시스템 에어컨은 무상 제공됩니다.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본 공동주택의 모든 주택형은 발코니 확장 및 세대 내 설치 될 시스템 에어컨을 감안하여 설계되었고 이에 따라 본 주택의 발코니는 일괄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전제로 분양되며, 전세대 발코니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일괄 시공하여 공급하므로 계약자는 개별적으로 발코니 미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미설치를 선택할 수 없사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주체에 대하여 발코니 미확장, 시스템 에어컨 미설치 또는 발코니 미확장, 에어컨 미설치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 내벽의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진입통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층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은 근린생활시설 등과 함께 전체 공용으로 하며, 각 호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 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단, 단순착오에 의한 면적 정정이나,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단, 중도금에 대해서는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시점 이후 중도금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각 라인별 최하층 및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외관 색채 및 패턴, 부대시설 등의 기타시설은 경관심의 재심의 등을 통해 색상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Ⅱ. 청약신청 및 유의사항

■ **청약신청자격**

•한국감정원 청약Home 게시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04.) 현재 만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은 각 군별 1인 1건 청약이 가능하며, 각각의 군별에 청약할 경우 1인 최대 3건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은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자 및 호수는 한국감정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군 별 층.호수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예비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공급일정**

구분	일정	장소
청약일	2020년 12월 17일(목요일)~18일(금요일) (08:00~17:30)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스마트폰 앱)
당첨자 발표	2020년 12월 23일(수요일) 16:00시 이후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스마트폰 앱)
계약일	2020년 12월 28일(월요일)~30일(수요일) (10:00~16:00)	장위 지웰에스테이트 견본주택(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34, 1층)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청약은 PC[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 에서 '청약Home' 검색]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전국 시중 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수협은행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안내**

이용 안내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인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이체한도 확인)
방법 및 절차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감정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군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신청 진행중 17:30이 경과 시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 청약신청금 및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모든 군 공통	**100만원 (금 일백만원)**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 (수협은행 신당역지점)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및 법인 등을 제외하고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구비사항</th></tr>
<tr><td>본인 신청시</td><td colspan="2">•공급신청서(견본주택 또는 은행창구 비치) •본인 도장(본인의 경우 서명 가능)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청약신청금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인 명의)</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td><td colspan="2">•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합니다.</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청약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법인</td><td colspan="2">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합니다.
•공급신청서(은행창구 비치)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약신청금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 명의)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td></tr>
</table>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 인이 동일 군 내 중복 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 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동일 인이 동일 군 내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공고일(2020.12.0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합니다.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제64조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까지 분양 받는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의 전매를(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주택법" 제64의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1조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발표

•추첨 : 한국감정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 별 층·호수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16:00시 이후)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 당첨자 안내사항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 계약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 납부완료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 후 계약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시 관련법령에 의거 잔여호실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장소 미방문,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부정당첨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함.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 한국감정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청약자가 정당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및 인터넷 청약 후 낙첨된 청약자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공급 단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수 없으며, 수의계약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청약 신청금 환불방법**

구분	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Ⅲ. 계약일정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계약기간 : 2020년 12월 28일(월요일)~2020년 12월 30일(수요일) (*계약체결시간 10:00~16:00) • 계약장소 : 장위 지웰에스테이트 견본주택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34, 1층)

■ **계약금 납부**

• 1차 계약금은 분양대금납부계좌로 무통장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고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구분	계약금 납부계좌	중도금 / 잔금 납부계좌	비고
금융기관	수협은행	수협은행	입금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요망
계좌번호	1010-2035-9636	세대별 가상계좌	
예금주	코리아신탁(주)	코리아신탁(주)	

※ 입금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 101동 3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해당 지정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예금주 코리아신탁(주)는 차입형토지신탁 계약에 의한 사업대행자로서 상기 분양수익금을 관리합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필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계약 체결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 주민등록 등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법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인감증명 1통(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및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시 상기 서류 이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1통(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내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도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 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을 따릅니다.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서울시 성북구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기관, 대출금액 및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추후에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별로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에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담보대출로 전환한 이후에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여야 함.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한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실계약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당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방문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방문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2년 9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의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되는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Ⅳ. 추가 선택 품목 계약 (무상, 유상옵션)

■ 추가 선택 품목 (유상옵션)

주택형	위치	품목	공급금액	비고
A타입	주방	ㄷ자 주방 + 가구조명 + 주방상판&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 무선충전콘세트 + 주방TV	₩ 2,900,000	웰스특화
B,C타입	주방	ㄷ자 주방 + 가구조명 + 주방상판&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 무선충전콘세트 + 주방TV	₩ 2,800,000	웰스특화
A,B,C타입	현관	3연동 중문	₩ 1,150,000	
A타입	거실, 주방	거실 간접조명 & 주방 디자인천장	₩ 900,000	
B,C타입	거실, 주방	거실 간접조명 & 주방 디자인천장	₩ 1,000,000	
A타입	서재, 복도	서재 시스템선반 + 복도 청소기장	₩ 2,950,000	
B,C타입	서재, 복도, 주방	서재 시스템선반 + 복도 청소기장 + 주방 교자상 장	₩ 3,050,000	
A,B,C타입	서재	붙박이장	₩ 900,000	

■ 추가 선택 품목 (무상옵션)

주택형	위치	품목	비고
A,B,C타입	주방	3구하이브리드쿡탑 & 복합오븐	SK매직
A,B,C타입	욕실	비데	대림바스
A,B,C타입	침실 발코니	전동 빨래건조대	SK매직
A,B,C타입	서재, 거실, 침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청정기능)	삼성전자

■ 추가 선택 품목 (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	추후 통보			※ 무통장 입금시 의뢰인 란에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의 성명을 기재요망 (예시 : 101동 1001호 홍길동의 경우 → 1011001홍길동)

Ⅴ.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이면서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포장, 단지 내 시설물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합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24)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이삿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나 일부세대에 한해서는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경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합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도시형생활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각 세대, 설계 등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도시형생활주택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새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커뮤니티 운영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관계법령에 의거 지하1층은 2.3m, 지하2층은 2.3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입주 학생은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실 및 홀 등 주거공용부분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은 주차장 117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상 및 지하주차장은 주거와 상가의 주차가 함께 별도의 구획없이 계획되어있으며 입주 후 운영방식에 따라 사용구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임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실외기실 그릴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그 위치는 점검 편의 등을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세탁실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세탁기,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지상구조물 및 환기그릴에 의해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고 소음과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에어컨 실외기,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한 주변 세대 저층 일부 소음 등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옥상의 옥상조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후 관리시에는 사다리 및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관리를 해야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 주택/홍보물 관련 사항

• 견본주택에는 확장세대 기준 B타입(39.653㎡)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CG와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유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달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을 실제와는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을 포함하므로 향후 관계기관의 인허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 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 CG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시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자연훼룸 DA,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세대 CG, 주민공동시설,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된 가구, 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차 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공사 시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세대타입이더라도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에 표현된 평면과 대칭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 상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 된 스프링클러헤드와 감지기는 본 공사와 무관한 견본주택용 소방설비로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제시 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부득이할 경우에는 동질 및 동급의 다른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등 전기배선관련 제품과 월패드 관련 제품 사양 및 바닥배수구, 점검구, 위생기구,수전,악세서리류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의 인승,속도,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를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외부창호, 실외기실도어 및 그릴창호 등은 본 공사시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프레임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창호 높이 및 손잡이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체결해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 설계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CG,공급간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된 발코니에는 별도의 급·배수 설비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시공될 수 있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천장에 배관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되며, 점검구의 위치 및 개소,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장에 급수급탕분배기를 설치 할 예정입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로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사용성을 고려하여 가구 및 창호의 시공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은 출입시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 일반, 주방가구 및 거울, 욕실장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 및 크기는 시공과정에서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옥탑지붕,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높이)등의 디자인 및 장식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동 세대 발코니에 장식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주방가구, 일반가구 규격 및 배치불만, 전자제품 사용 불편 등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 평면 및 가구류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등을 입주자 개인의 기호에 맞게 변경할 수 없으며 내부 시설물의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위치는 A타입:복도벽체, B&C타입:서재 벽체에 노출형태로 설치됩니다.(옵션선택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된 모든 창호의 크기 및 위치, 하부턱 높이, 난간대 디자인 및 높이, 색상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 깊이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급,배수배관 및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욕실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주방TV(옵션 선택시) 및 욕실폰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보일러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이 적용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브랜드, 모델 또는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옵션)
• 실외기실에 보일러, 전열교환기가 같이 설치됨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지붕에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설치로 인접한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환기를 위한 배기덕트시설이 일부 동에 설치되며, 인접세대에는 냄새 등 환경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가전의 크기 및 사양에 따라 주방쪽으로 가전 일부가 돌출될 수 있으며 일부 가전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중 유상옵션 주방(웰스특화), 서재(대형드레스룸)를 기준으로 전시하였으며, 추가선택옵션에 따라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특허권 등 부득이한 경우 및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계약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이 협소하거나 안목치수가 도면 및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가전의 크기 및 사양에 따라 주방쪽으로 가전 일부가 돌출될 수 있으며 일부 가전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냉장고가 코너부에 설치되는 경우 가전의 크기 및 구성에 따라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될 수 없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세대 침실 내부(A타입 : 복도 / B,C타입 : 서재)에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통합(또는 개별)으로 설치되며, 위치 및 형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커버가 노출되며 사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싱크대 내부 등 주방 가구 디자인은 온수분배기 설치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조명, 판넬, 타일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실별 발코니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장, 침실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세탁실 도어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천장, 벽, 바닥)에는 마루, 타일, 도배,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탁실 도어는 접이식 가구도어로 설치되며, 가전기기 사이즈에 따라 입주 시 도어를 탈착하여 설치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을 집니다.
• 견본주택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팬던트는 전시용으로 실시공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벽, 바닥 타일의 줄눈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줄눈 및 타일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유, 무상옵션 항목 및 확장공사 포함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됩니다.
• 단위세대의 내부 단차부위(발코니, 욕실, 현관, 세탁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설비 배관상의 이유로 커튼박스 크기는 타입별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각 선택형 평면(유,무상)에 따라 가구, 도어 구성 및 크기 등이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시 타일, 디자인월, 엔지니어드스톤의 패턴 및 결(베인)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시공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실 벽, 주방 벽,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디딤판 등)
• 본 공사시 중문 등 유리 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는) 유리 벽체 및 도어, 프레임 및 하드웨어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현관 중문(유상옵션)에는 모헤어 또는 가스켓이 설치되며 틈새를 통한 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시공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현관문 및 실외기실도어, 그릴의 도장, 색상 및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에 표기된 유/무상, 확장시 무상 등의 여부의 기준은 비확장 및 기본확장형 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정확한 사항은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철제방화문(현관, 실외기실 등)은 방화성능을 고려하여 본 공사시 하부씰, 상하좌우 프레임 형상 및 재질이 변경됩니다.
•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내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시스템가구 적용 부위 및 내부 구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의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장비가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가동시 작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외부 시설물(DA, 쓰레기집적소 등)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관계기관의 협의 및 디자인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주거동 외관 디자인(외벽의 줄눈, 리브형태, 지붕모양, 입면마감재료, 색채, 측벽,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모양 ,창호 컬러 등), 부대복리시설의 색상 및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며,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시설 및 식재의 종류, 수량 식재위치는 인허가청의 요청 혹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한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은 현장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현장 마감재 사양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기현장과 비교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형태 및 크기 등 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계획되어있지 않으며 차후 문주가 설치될 경우 형태 및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맞게 계획되어지며 이로인해 일부 세대,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지상층 대지 등에 조망, 동선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별,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와 색상 및 외부창호 색상과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구조공간, 설비시설물, 기타 다양한 시설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분양안내책자(카탈로그 등) 및 모델하우스에 표현된 커뮤니티시설(주민운동시설 등) 내부에 표현된 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기기 및 비품 등)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주민부대복리시설에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품목만 시공하므로 기타 시설,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 및 운영, 유지,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실제 시공될 시스템 등 설치품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비교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하며, 환경적 특성상 전자기기, 목재류 등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습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설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 후 각 입주자대표회의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여건
• 공사 시행시 서울시 성북구 관리부서(기관)와 협의에 따라 일부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이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근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구역밖 기반시설의 설치 주체 및 비용부담 주체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 되며, 하자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준공검사) 도서를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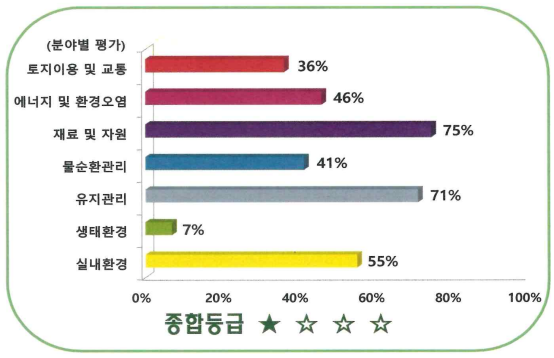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장위1-2획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4PAPSU201106
건 축 주	: 장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증기관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준공예정일	: 2022. 12. 30.	유효기간	: 2020.11.13.~사용승인일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124-26외 16필지	**인증 등급**	
층 수	: 지하2층, 지상12층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연 면 적	: 15,954.035㎡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64호
설 계 자	: 정감건축사사무소		: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그린4등급)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 년 11 월 13 일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이사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예비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 장위동1-2획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20-주-에-1-0417
준공연도	: 20221130	평가자	: 박한결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124-26번지외 16필지	인증기관	: 한국감정원
층 수	: 지하2층 / 지상12층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 15954.035(㎡)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인증등급**	
설계자	: 정감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0, 100, 200, 300, 400, 500) 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설계	81.0	에너지효율높음 (1+++, 1++, 1+, 1, 2, 3, 4, 5, 6, 7) 에너지효율낮음	1	CO_2 배출적음 (48, 56, 64, 72) CO_2 배출많음	30.5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1.0	87.9	68.6	18.4
급탕	30.7	34.2	25.4	7.0
조명	9.3	7.2	19.9	3.4
환기		3.7	10.1	1.7
합계	81.0	133.0	124.0	30.5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 년 10 월 26 일

한국감정원 장

■ 친환경주택성능인증

녹색건축 인증심사 결과표

녹색건축 인증심사 결과표

건물명	장위1-2획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건물위치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24-26번지 외 16필지					
인증번호	4PAPSU201106			인증단계	예비인증	
부 문	분 야	분야별총점	획득점수	획득비율	가중치	최종점수
부분별 평가점수	토지이용 및 교통	16	5.8	0.3625	10	3.63
	에너지 및 환경오염	20	9.2	0.4600	25	11.50
	재료 및 자원	15	11.2	0.7467	18	13.44
	물순환관리	14	5.8	0.4143	10	4.14
	유지관리	9	6.4	0.7111	7	4.98
	생태환경	20	1.4	0.0700	10	0.70
	실내환경	21	11.6	0.5524	20	11.05
	합계					49.44
	혁신적인 설계	혁신적인 설계 인증항목 평가				0.75
		녹색건축전문가 설계 참여				0
		녹색건축 계획 및 설계 심의 결과				0
총 점	50.19			등 급	일반(그린4등급)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녹색건축 인증심사 결과 위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서명날인 합니다.

2020 년 11 월 13 일

부분	심사위원		심의위원		
	성 명	서 명	성 명	전체 결과에 대한 동의 여부	서 명
토지이용 및 교통	김이형		이기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에너지 및 환경오염	박영빈		김대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재료 및 자원	이재욱		이정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물순환 관리	박영빈		김대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유지 관리	이재욱		이정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생태환경	명준호		이기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실내환경	이승민		명일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심의위원장 최종의견	이기완	장위1-2획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녹색건축 인증 심의결과에 대해 총점수 50.19 점 일반(그린4등급) 으로 7개분야 심의위원중 7 개분야 심의위원이 동의, 0 개분야 심의위원이 동의하지않아 [심의통과]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7개분야 심의위원이 동의하여 심의통과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이사장

자체평가서

○ 자체평가서

» 신축-공동주택(2016-5) 평가서작성 결과

건축물명칭	장위1-2획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인증구분		예비인증	
전문분야	인 증 항 목	자체평가	심사위원	심의위원	배점
1 토지이용 및 교통	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2	2	가결	2
	1.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0	0	가결	3
	1.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0	0	가결	2
	1.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0	0	가결	2
	1.5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과 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의 연결	0	0	가결	2
	1.6 대중교통의 근접성	1.6	1.6	가결	2
	1.7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1.2	1.2	가결	2
	1.8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1	1	가결	1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2.1 에너지 성능	7.2	7.2	가결	12
	2.2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0.8	0.8	가결	2
	2.3 신·재생에너지 이용	0	0	가결	3
	2.4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0	0	가결	1
	2.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1.2	1.2	가결	2
3 재료 및 자원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3.2	3.2	가결	4
	3.2 저탄소 자재의 사용	1.6	1.6	가결	2
	3.3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1.6	1.6	가결	2
	3.4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1.6	1.6	가결	2
	3.5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2.4	2.4	가결	4
	3.6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0.8	0.8	가결	1
4 물순환관리	4.1 빗물관리	0	0	가결	5
	4.2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3.2	3.2	가결	4
	4.3 절수형 기기 사용	1.8	1.8	가결	3
	4.4 물 사용량 모니터링	0.8	0.8	가결	2
5 유지관리	5.1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1.2	1.2	가결	2
	5.2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2	2	가결	2
	5.3 사용자 매뉴얼 제공	2	2	가결	2
	5.4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1.2	1.2	가결	3
6 생태환경	6.1 언계된 녹지축 조성	0	0	가결	2
	6.2 자연지반 녹지율	0.4	0.4	가결	4
	6.3 생태면적률	1	1	가결	10
	6.4 비오톱 조성	0	0	가결	4
7 실내환경	7.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4.8	4.8	가결	6
	7.2 자연 환기성능 확보	0	0	가결	2
	7.3 단위세대의 환기성능확보	1.2	1.2	가결	2
	7.4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0.4	0.4	가결	1
	7.5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2	2	가결	2
	7.6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2	1.2	가결	2
	7.7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1.2	1.2	가결	2
	7.8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0	0	가결	2
	7.9 화장실 급배수 소음	0.8	0.8	가결	2
8 주택성능 분야	8.1 내구성	-	-	평가안함	-
	8.2 가변성	-	-	평가안함	-
	8.3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	평가안함	-
	8.4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 배려	-	-	평가안함	-
	8.5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평가안함	-
	8.6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	평가안함	-
	8.7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	평가안함	-
	8.8 방범안전 콘텐츠	-	-	평가안함	-
	8.9 강지 및 경보설비	-	-	평가안함	-
	8.10 제연설비	-	-	평가안함	-
	8.11 내화성능	-	-	평가안함	-
	8.12 수평피난거리	-	-	평가안함	-
	8.13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	평가안함	-
	8.14 피난설비	-	-	평가안함	-
	8.15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	평가안함	-
	8.16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평가안함	-
ID 혁신적인 설계	1 토지이용 및 교통 — 대안적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0.75	0.75	가결	1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 제로에너지건축물	0	0	가결	3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 외피 열교 방지	0	0	가결	1
	3 재료 및 자원 — 건축물 전과정평가 수행	0	0	가결	2
	3 재료 및 자원 —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	0	0	가결	5
	4 물순환 관리 —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0	0	가결	1
	5 유지관리 — 녹색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	0	0	가결	1
	6 생태환경 — 표토재활용 비율	0	0	가결	1
	녹색건축전문가의 설계 참여	0	0	가결	1
	녹색건축 계획·설계 심의를 통해 평가	0	0	가결	3

VI. 기타 주요사항

■ 감리회사 및 감리 금액

구 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원,VAT별도)	사업장 소재지
공사 감리 (건축, 토목, 설비, 전기, 소방, 조경)	정감 건축사 사무소	이억이천만원정 (₩220,0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46, 401호(개포동, 쌍봉빌딩)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 보증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 기간
제 01292020-101-0012000 호	사백팔십억삼천사십만사천삼십원정 (₩48,030,404,03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본조에서 "보증회사"라 칭함)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체결한 '표준사업약정서'에 따라, 보증사고(조합사업비대출보증약관 또는 분양보증약관에 따른 보증사고를 말함)가 발생할 경우 수분양자(매수인 포함)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매수인 포함)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도시형생활주택**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차입형 토지신탁 고지사항

• 본 사업은 사업대행자인 코리아신탁(주)와 사업주체인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체결한 차입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코리아신탁(주)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여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고 코리아신탁(주)가 대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대행자 방식 정비사업이며 차입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코리아신탁(주)는 사업대행자로 의무를 부담함.
• 코리아신탁(주)는 사업대행자(수탁자)의 지위에서 수분양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수분양자에 대한 제반 관리 업무 및 본 공급 계약 상 매도인으로서 발생되는 일체의 의무(공급계약 해제/해지시 공급대금 반환 의무 이행,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 하자담보책임, 입주지연 지체상금 지급 등)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그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함.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일체의 분양대금은 본 공급계약에 따라 각각 지정된 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입금포함)로 입금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분양대금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음.
• 이 공급계약에 의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시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수인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관련 차입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포함)되는 시점 또는 수분양자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코리아신탁(주)가 분양계약상 사업대행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수분양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함.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주체인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시공사인 신영건설이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코리아신탁(주)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 코리아신탁(주)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90081(2009.10.12.) • 사업방식 : 차입형토지신탁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사업대행자	시공사
상호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신영건설
주소	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 151, 4층(장위동)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에이동 257-1호(구미동, 시그마2오피스텔)
법인등록번호	114471-0003159	110111-2937831	110111-0101909

■ 견본주택 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34, 1층(장위 지웰에스테이트 견본주택)
■ 분양문의 1811-0031
■ 분양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http://jw-gwell.co.kr/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